

<표5>언론피해에 대한 향후 대응

대 응 방 법	신 청 인
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청구	71.8%
법원에 소송제기	14.5%
해당매체에 적극 항의	7.3%
다른 상담기관 이용	1.8%
대응하지 않겠다	1.8%
기타	2.7%
무응답	0%

표4,5의 출처: 주동황외, <언론피해구제제도 연구>, 한국언론재단, 2004년

## XI. 맺음말

이상으로 지난 1월 1일에 제정, 오는 7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언론중재법에 대한 주요내용들을 살펴봤다.

언론중재법은 1980년 12월 31일 신군부가 제정한 언론기본법에 의해 태동된 언론중재제도를 좀더 체계적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는 각계의 여론에 따라 오래전부터 입법이 추진돼오다가 2004년말 법제정이 급물살을 타면서 마침내 단일 법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당시 조정과 중재라는 개념조차 불명확했던 언론기본법과 비교할 때 그동안 언론중재제도의 성장은 괄목할만한 것이다.

이번에 제정된 언론중재법은 정간물법에 규정되고 있지 않은 손해배상청구제도의 신설이라든가 인터넷언론에 대한 피해구제를 새롭게 마련한 것 등은 높게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언론중재법에서 처음 도입되는 언론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전문성 등에 비춰 어떠한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속단하기가 어렵다고 본다. 시정권고 제도는 현행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과의 부합 문제와 더불어 그에 대한 심의 기준을 어떻게 마련하며, 또 언론에 대한 사후 검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언론중재위의 역할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사법적 분쟁해결수단을 거치지 않고서도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법부에 의한 해결은 독자와 국민들의 관심에서 한참 떨어진 뒤에야 이뤄지는 제도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같은 점에서 미뤄 언론중재위원회는 현재의 소극적 분쟁해결기관에서 적극

적 분쟁해결기관으로서의 개편도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